

의안번호	2209319
의 퇴 인	고동진의원
회 답 일	2025.6.11.
추계번호	25D1844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의 6 제3항(상 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) 신설	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과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6조의4에도 불구하고, 당시 직무의 성질 및 상황, 현재 시점의 사회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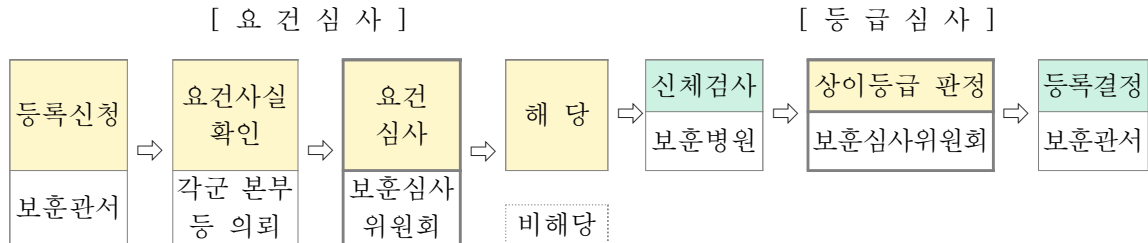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6조의6 제3항(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) 신설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과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이하 “PTSD”)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, 당시 직무의 성질 및 상황, 현재 시점의 사회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행 1급~7급까지 구분하여 판정하는 상이등급과는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- 현행법령에 따르면, PTSD 상이를 입은 장병 등이 전·공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건 심사와 상이등급 심사를 거쳐 등급(1~7급)을 받

아야 하며,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및 각종 지원(의료취업 등)을 차등 제공하고 있음

[표 1] PTSD 등 상이자의 심사·등록체계



자료: 국가보훈부

- 요건심사는 전투 또는 공무 수행과 상이(傷痕)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절차로, 시행령의 요건 기준·범위 등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임
 - PTSD의 경우, 외상의 심각성(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협), 진단 시기, 현재 일상생활의 제약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
- 상이등급 심사는 상이 부위 및 양태,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,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신체 상이부위별 장애 증상과 기능 손실의 정도를 판단
 - 눈/귀·코·입/흉터/정신·신경/흉복부/체간/팔·손가락/다리·발가락 등으로 신체 상이부위를 구분
 - PTSD를 포함한 모든 정신장애의 경우, 노동능력 상실 정도(정신장애 평가도구 등 활용)를 확인하여 등급을 부여
- PTSD로 인해 등급판정을 받은 건수는 최근 5년간 62건이며, 23건은 기준에 미달하여 등급을 받지 못하였음

[표 2]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PTSD) 등급 판정 현황

(단위: 명)

	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합계
상이등급 판정자	4급	—	1	—	—	—	1
	5급	—	—	—	1	—	1
	6급1항	—	1	—	1	—	2
	6급2항	3	2	2	2	1	10
	7급	5	14	9	16	4	48
	소계	8	18	11	20	5	62
기준미달		4	3	9	4	3	23
합 계		12	21	20	24	8	85

주: 신규 및 재확인 대상자 기준

자료: 국가보훈부

- 개정안에 따라 PTSD에 대해 현행 1급~7급까지 구분하여 판정하는 상이등급과는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할 경우, 공상군경 등으로 등록¹⁾되어 국가유공자로서 보훈급여금 및 각종 지원(의료·취업 등)을 차등 제공받게 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은 별도의 상이등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, 별도의 상이등급에 따라 등급을 받게 될 군인, 경찰·소방공무원의 규모, 그에 따라 제공받게 될 예우의 종류와 규모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4. 전상군경(戰傷軍警)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(퇴역·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퇴직(면직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)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"상이등급"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6. 공상군경(公傷軍警)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
IV. 부대의견

☐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